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-1048호

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을 마련하고,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9. 26.

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대상문화재

연번	구분	문화재명	소재지
1	국가(사적)	울산 경상좌도병영성	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216-33번지 일원

2. 목　　적

◦「문화재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(안)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, 객관성을 확보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·개선하고자 함

3. 공고기간 : 2023. 9. 26. ~ 10. 16. (20일간)

4. 공람장소 : 울산광역시 중구청 대표 누리집(https://www.junggu.ulsan.kr)

5.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

◦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(개발 및 건축행위 등): 중구청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 처리

◦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(개발 및 건축행위 등)

: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

6. 의견 제출

◦ 제출기간: 공고기간 만료일까지(2023. 10. 16., 18:00까지)

◦ 제출방법: 서면(우편 또는 방문), 전자우편(e-mail), 팩스

◦ 제출장소: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(문화재계)

- 주　　소: (44475)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(복산동), 중구청 3층 문화관광과
- 전자우편: ssh1983@korea.kr
- 팩　　스: 052-290-3659

7. 기타사항

◦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◦ 본 허용기준(안)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**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**

8. 문의처 :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재계(☏052-290-3654)

붙임　1.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(안) 1부.
　　2. 의견서 서식 1부.　끝.